



제1683호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045 호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아르바이트] 모집공고 총 무 과 2
- 공 고 제 1058 호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 차량 자진 인수통 교 통 행 정 과 4
- 공 고 제 1075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6
- 공 고 제 1080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9
- 공 고 제 1082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 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12
- 공 고 제 1083 호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 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3
- 공 고 제 1084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3
- 의 회 사 무 국 제 16 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 의 회 사 무 국 35

고 시

- 고 시 제 44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45
- 고 시 제 4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48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45호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2022. 6. 2.(목) ~ 6. 10.(금) 18:00한 (9일간)
- 모집인원 : 60명 * 특별모집 : 18명 / 일반모집 : 42명
- 접 수 처 : 남동구 예약 홈페이지(www.namdong.go.kr/main/community/apply/parttime.jsp)
- 근무기간 : 2022. 7. 4. ~ 7. 29. 13:00 ~ 18:00 (20일간, 주5일 근무기준)
* 근무요일 및 시간은 배치 기관별 다를수 있음
- 보 수 : 1일 52,850원(교통비 및 식비 포함), 1주 만근시 1일 주차수당 지급(마지막주 제외)
*2022년 남동구 생활임금 10,570원/1시간 적용
- 지급방법 : 근무기간 종료후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 공제 후 개인계좌로 입금
- 근무내용 : 행정업무 및 현장근무(환경정비 분야 등) 지원
- 자격요건
 - 공고일(2022. 5. 27.)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2년간(2020년 하계 ~ 2022년 동계) 우리구에서 행정체험연수(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학생
* 제외사항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방학의 개념이 없는 대학 제외, 휴학생 및 유학생(해외대학), 대학원생 제외
-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내 접수 시 적격자 중 전원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30% 이내) 후 나머지 학생은 전산추첨에 의해 선발
* 신청서 기재사항 중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특별모집의 경우 행정체험연수 참여 소득으로 인한 급여 변동 및 보장중지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신청자 본인이 확인하여 신청(보장중지 시 신규 신청 절차와 동일함)
- 추첨일시 및 장소
 - 추첨일시 : 2022. 6. 16.(목) 11:00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 추첨방법 :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 (희망시 참관 가능:선착순 3명 이내)
- 최종선발자 공고 : 2022. 6. 20.(월) 09:00 / 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 신청자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신청은 당연 무효 처리됨
 - 대상자 선정 후 6.22일까지 재학증명서('22.5.1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요, 미제출시 선발 당연 무효처리됨.
 - 연락 가능한 개인 전화(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최초 근무일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참석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총무과(☎ 453-2234)로 문의바랍니다.

* 코로나19 및 2022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공고 내용은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58호

**불법 주정차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인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거 단속 및 견인되어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인수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 차량 자진 인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5. 23. ~ 2022. 6. 12.(20일간)
3. 공고대상 : 불법 주정차 피견인 차량 인수통지 반송 10건 (붙임 대상차량 현황 참조)
4. 보관장소 :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 (☎032) 453-290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47)
5. 기타사항 :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미반환차량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분(매각 또는 폐차)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 교통행정과 (☎032) 453-2909)

불법 주정차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공시송달 대상 현황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성명	위반장소	보관장소
1	41구98**	로체	김**	도림동 693 부근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
2	73노31**	스타렉스	정**	남촌동 신원기술 부근	
3	13우44**	레간자	최**	구월동 동인천중학교 부근	
4	52누28**	투스카니	ASUNCION **** *	논현동 동산마을아파트 부근	
5	02루82**	SM5	THAI **** **	간석동 해돋이빌라 부근	
6	08오24**	원스톱	석****	구월동 더누리자타운 부근	
7	46구84**	벤츠	이**	인천논현역 부근	
8	46보72**	체어맨	김**	간석동 신세계아파트 부근	
9	36러53**	SM5	임**	간석동 제이씨라인 부근	
10	46어98**	체어맨	(주)자****	구월동 문두영베이커리 부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6. ~ 2022. 6. 9.(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김*수	인천99아**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67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현	인천84바**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춘	인천99아**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춘	인천99아**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선	인천84바**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90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방*근	인천99아**8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문*남	인천99아**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임*수	인천84바**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8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을	인천84바**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식	인천86바**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선	인천84바**74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선	인천84바**74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현	인천84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은	인천84바**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주*용	인천84바**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주	인천84바**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주	인천84바**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채*병	인천86바**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길*희	인천81바**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준	인천86바**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

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8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453-2807, 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남 동 구 청 장**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8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도시계획시설(새남촌 공영주차장정비)사업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주차장 결정 면적 $A=14,300\text{m}^2$
- 변경: 주차장 결정 면적 $A=14,300\text{m}^2$
부대시설(공중화장실) 신축 연면적 $A=20\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남촌동)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357-1	차	5,358	5,358	남동구청				
2	363-2	전	4	4	국토부				
3	366-2	도	15,647	2,102	국토부				
4	476-1	도	44,023	628	국토부				
5	480-1	차	1,915	1,915	남동구청				
6	482-1	차	3,210	3,210	남동구청				
7	493-1	도	5,708	382	국토부				
8	494-11	도	475	224	국토부				
9	598-2	도	1,314	13	국토부				
10	598-43	도	241	241	국토부				
11	598-57	도	2,968	223	국토부				
소 계			14,300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82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상위 규정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1) 삭제
 - 사무직원 중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연가처리 등 직원복무에 관한 권한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2-1) 삭제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공원녹지 점용허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상위 규정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1) 삭제
 - 사무직원 중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연가처리 등 직원복무에 관한 권한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2-1) 삭제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공원녹지 점용허가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2-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세무과)	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다.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발급 2.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서 접수처리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지방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세무과) (세입징수과)	1. 지방세(납세·독촉·체납)고지서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3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0조, 제22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청 소 행정과)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2.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68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구청장 (환경보전과)	1.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업무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라.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 마. 오염피해 발생 등에 따른 보고·검사 2.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사무 3.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 사무 4. 특정공사사전신고(변경) 사무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 같은 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40조 및 제76조 내지 제80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9조 「악취방지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건설과)	1.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도로법」 제23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건축과)	1. 연면적 1,000㎡이하인 건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신축증축대수선·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포함) 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2. 건축신고(착공 및 사용승인 포함)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나. 건축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다. 용도변경 신고(표시변경 포함)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및 존치 기간 연장 3. 위반건축물 조사, 관리 4.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14조, 제8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제38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구청장 (도 시 경관과)	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4.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
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
략
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83호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시 위임사무의 일부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2) 신설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 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
 - 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

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2,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시 위임사무의 일부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위임

-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2) 신설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 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
 - 사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구청장 (공 원 녹지과)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남동산단 지원 사업소
	2. 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3.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제외대상: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녹지, 묘지공원) 가. 대상 1) 소공원 2) 어린이공원 3)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주제공원(단, 조성 및 조성중인 공원은 기존 공원관리청의 사무로 함) 4) 완충·경관·연결녹지 나. 권한 1) 도시·군계획시설(공원·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의 관리 (2) 녹지의 관리 2)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3)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4) 원상회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25조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구청장 (공 원 녹지과)	(5) 입장료 · 사용료 · 점용료 등의 부과 · 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6) 과태료 부과 · 징수 (7) 도시공원대장 작성 (8)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6조	남동산단 지원 사업소
	5. 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원 · 녹지 및 일반광장 · 경관광장 · 쉼터와 녹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 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원상복구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재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u>별표 1과</u> 같다.	제2조(재위임사항) ----- ----- ----- ----- <u>별표 1, 사업소</u> <u>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u> <u>2와</u> -----.

[참고자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
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
략
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84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282리68** 외 8건 (첨부파일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2. 5. 26. ~ 6. 10.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2년 5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282리68**	서*민	2022.05.24.	폐문부재	등화장치 임의설치 (보조제동등 추가설치)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타워)
2	인천서타84* *	이*희	2022.05.24.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번길 **, *층 **호(구월동, **프라자)
3	53다50**	김*빈	2022.05.24.	폐문부재	등화장치 필름부착	215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간석동)
4	40마85**	형*우	2022.05.24.	폐문부재	등화장치 임의설치(점멸동작장치)	21538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 ***호(만수동, *****주택)
5	13구28**	송*영	2022.05.24.	폐문부재	등화장치 임의설치(점멸동작장치)	216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도림동, *****아파트)
6	인천미추홀 파89**	이*민	2022.05.24.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만수동, **빌라)
7	20노95**	강*희	2022.05.24.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스티커)	215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8	09서66**	문*영	2022.05.24.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스티커)	21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9	10서76**	엄*권	2022.05.24.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스티커)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16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 변경(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5. 27. ~ 6.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28
----------	------

발의년월일 : 2022년 5월 27일

발 의 자 : 이유경의원

찬 성 자 : 반미선의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 변경(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8명” 을 각각 “9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64조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 ----- ----- --.
1. 의회운영위원회 <u>8명</u> 이내	1. ----- <u>9명</u> ---
2. 총무위원회 <u>8명</u> 이내	2. ----- <u>9명</u> ---
3. 사회도시위원회 <u>8명</u> 이내	3. ----- <u>9명</u>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강 필 모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제2조 관련)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23	15	108	
중 구	(7)	(1)	(6)	
가선거구			3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동 구	(8)	(1)	(7)	
가선거구			4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나선거구			3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미추홀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3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3	송의2동, 송의1·3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라선거구			4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13)	(2)	(11)	
가선거구			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나선거구			2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다선거구			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라선거구			2	송도1동, 송도3동
마선거구			3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계	비례	지역구	
남 동 구	(18)	(2)	(16)	
가선거구			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나선거구			3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다선거구			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라선거구			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마선거구			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바선거구			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부 평 구	(18)	(2)	(16)	
가선거구			2	부평1동, 부평4동
나선거구			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다선거구			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라선거구			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 양 구	(10)	(1)	(9)	
가선거구			2	효성1동, 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서 구	(20)	(2)	(18)	
가선거구			3	청라1동, 청라2동
나선거구			3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다선거구			3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3	검암정서동, 연희동
마선거구			3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바선거구			3	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강 화 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웅 진 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나선거구			2	자월면, 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 대청면

* 의원 총정수는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지역 내의 자치구·시·군의회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 1명(동구의회 가선거구 1명)을 포함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마달로 75 (구월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3-27 (구월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마달로 75 (구월동)	2009.11.16	성마달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2.5.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성마달로 기초구간에위치하여75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40-9, 340-6, 34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262 (도림동)	2009.11.16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22.5.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 기초구간에위치하여262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9-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51번길 24 (고잔동)	2009.11.16	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5.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51번길 기초구간에위치하여24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3-27 (구월동)	2022.5.20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41 (간석동)	2022.5.20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1 (간석동)	2022.5.20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17-7 (구월동)	2022.5.20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4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20 (고잔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64 (도림동)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20 (고잔동)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621번길 기초구간에위치하여20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94-1, 94-8, 94-16, 94-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55 (도림동)	2011.03.24	도림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도림북로16번길 기초구간에위치하여55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64 (도림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805-19 (도림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0-25 (구월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0-23 (구월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8-14 (구월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06번길 36-10 (만수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18-3 (만수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18-1 (만수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번길 10-1 (구월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18 (간석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14 (간석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41번길 26 (고잔동)	2022.5.2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